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-11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관 예정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으로 이용 근로자 만족도 제고
- 2)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

### 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 : 2019. 11. 1. ~ 2020. 10. 30. (1년)
- 2) 위탁운영 시설현황
  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  - 위 치 : 마포구 매봉산로 18, 상암동(창업복지관 3층)
  - 면 적 : 65m<sup>2</sup>
- 3) 위탁사무 범위
  - 근로 법률상담 및 교육
  - 근로자 복지사업,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
  -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,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
  -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등

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5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#### 다. 추진 일정

1) 공개모집 공고 : 2019. 10. 7.

2) 신청서 접수 : 2019. 10. 8. ~ 10. 18.

3) 선정 심사 : 2019. 10. 28. ~ 10. 31. (기간 중 1일)

4) 협약 체결 : 2019. 11월 중

5) 위탁 운영 : 2019. 11월 중 (위탁기간 1년)

※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#### <지방자치법>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<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운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근로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붙임 :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1부.

##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(2019년 기준)

□ 소요예산 : 359,000천원(전액 시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금액	세부내용	비고
전액 시비	인건비	140,500	○ 기본급 : 114,906,000원 - 센터장1명, 팀장1명, 팀원2명 ○ 4대보험 : 114,906,000원×10% ○ 각종수당 : 가족수당, 초과근무수당 등 ※ 2019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임금 지급 기준	센터장, 팀장 5호봉적용 팀원1호봉
	사업비	200,500	○ 법률구조사업 등 9개 사업	세부계획 참조
	운영비	18,000	○ 사무실 운영비 : 1,500,000×12개월	
<b>합계</b>		359,000		

※ 20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(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-3844호, 2019. 3. 28.)  
에 따라 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 등 전액 지원